

(주)동양 협력사 행동규범

1. 개요

본 행동규범은 동양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및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양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본 규범은 UNGC 원칙,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동양의 ESG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규 협력사와의 계약 시, 해당 업체가 본 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협력사가 본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인권/노동

협력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근로자를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형태의 고용 관계에 적용됩니다.

1) 강제노동 금지 및 자발적 취업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전 통보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강제노동, 채무노동 또는 불법적인 근로 강요를 금지하며, 근로자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압수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3) 근로 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일마다 최고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 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6)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

현지 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참여에 대한 권리와 집단 교섭권,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 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체계 수립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은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규정 마련 및 안전 작업 조치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이들 위해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 방안

화재, 자연재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치, 장애물이 없고 명확한 탈출구,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산업 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시스템을 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육체노동의 위해요소(반복작업, 중량 물 취급 등)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위생 관리

근로자에게 깨끗한 화장실, 식수,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기숙사가 제공될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5)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물리적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을 제공하고 해당 설비에 대해 적절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6) 위생, 식품 및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 모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및 식당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조명,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및 환기시설, 안전한 개인 보관시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7)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모든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건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4장. 환경

협력사는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 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 환경 허가 및 보고

기업은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기업은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 자원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재료 대체, 자재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및 폐기물 관리

기업은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 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식별 표기, 라벨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대기오염 배출 관리

기업은 공정상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기 배출 물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통제 및 처리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유관 법규에서 정하는 법적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 수자원 관리

기업은 수자원 사용 및 배출량을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배출 물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통제 및 처리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유관 법규에서 정하는 법적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Scope 1, 간접배출 Scope 2)을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7) 친환경 제품/서비스

협력사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물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친환경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친환경 인허가 및 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윤리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업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제정 및 준수해야 합니다.

2) 부당 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허가,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간접적인 금품거래를 약속, 제안, 허가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기업은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공급사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노무, 보건과 안전, 환경 관리 실태, 사업 활동, 지배구조, 재무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며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4) 지적재산 보호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고객과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5)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7)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코발트, 탈탄륨, 주석, 텅스텐, 금 등의 책임 광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 경영시스템 구축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 사회적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해당 성명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어로 작성하여 조직 내 전파 및 공유하고,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준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용하여 모니터링 및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3) 위험 평가 및 관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은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5) 목표 관리

기업의 사회, 환경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밝힌 문서를 작성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진척도를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6)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 준수를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7)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등을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8) 공급업체 관리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기업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은 협력업체가 본 규범의 요구사항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위험을 식별한 경우, 협력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주)동양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사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주)동양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동양의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본 행동규범과 그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규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양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서약과 관련하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방문, 실사, 자료 제출 및 시정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동양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동의합니다.
5.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동양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2024 년 3 월 일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